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12호 2010. 2. 24.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200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201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12
- 정선군조례 제2202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14

【훈 령】

- 정선군훈령 제387호 정선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20
- 정선군훈령 제388호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개정규정..... 51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0-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52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63호 2010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53
- 정선군공고 제2010-72호 정선군도로점용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54
- 정선군공고 제2010-76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2
- 정선군공고 제2010-77호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5
- 정선군공고 제2010-78호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71
- 정선군공고 제2010-93호 2010년도 소나무류 재선충병방지 고사목제거사업 공고.....76
- 정선군공고 제2010-101호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2
- 정선군공고 제2010-102호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공고.....84
- 정선군공고 2010-10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공모 공고..... 90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0-2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94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0-3호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8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2. 24.

정선군조례 제2200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정의에 의한다.
5.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납골시설을 말한다.
7. “봉안묘”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묘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사용

제4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용허가 시 관내, 관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2. 죽은 태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4.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사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제6조(사용장소의 지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득한 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격) ①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봉안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망일(개장유골은 신청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가족과 공설묘지 내 이미 매장되어 안치된 자의 가족유골 및 납골을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정선군하늘터 시설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7. 장사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
 9. 기타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군수는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은 기존 사용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자의 사망 시 그 연고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등) ①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사용료 이외의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다만, 사용권자가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⑤사용료 납입 후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환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관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2. 관내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주소변경 등 신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안의 시설,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개장제한) 사용허가를 받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안치하여 이미 사용 중인 자는 공설묘지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묘에서 봉안묘나 봉안당, 봉안당에서 봉안묘, 봉안묘에서 봉안당으로의 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장사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제14조(위탁운영 등) ①군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

하던 모든 장부·서류와 장비·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군수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이 조례 및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군수는 위탁의 취소 결정일 1월전에 수탁자에게 취소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분묘 및 봉안묘

제18조(분묘 및 봉안묘의 면적 등) ①분묘는 점속형 평분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분묘의 면적은 단장은 6.3제곱미터, 합장은 8.1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봉안묘는 1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유골함 12기를 안치할 수 있다.

제19조(분묘 및 봉안묘의 구조) ①분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②봉안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0조(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기간) ①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봉안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합장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에 의하여 개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매장 전인 때에 한하여 이미 납부된 전액을 환불하며, 사용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2조(합장) ①합장을 할 분묘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합장묘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최초 매장자는 제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④제3항에 의하여 매장된 자의 배우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제23조(개장명령)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 및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제2항에 의한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봉안당

제24조(시설기준) 봉안당에는 연고자실과 무연고자실을 두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5조(사용기간 등) ①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월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기간이 경과된 무연유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내 일정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④봉안당 사용장소의 반환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무연고 유골의 처리 등)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군지역의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분묘의 유골은 무연고자실에 안치할 수 있으며,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유골은 지역에 관계없이 안치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2. 「정선군납골당설치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설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비 고
공설묘지	정선 하늘공원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27번지	
공설봉안시설	하늘원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27번지	
공설화장시설	정선 하늘터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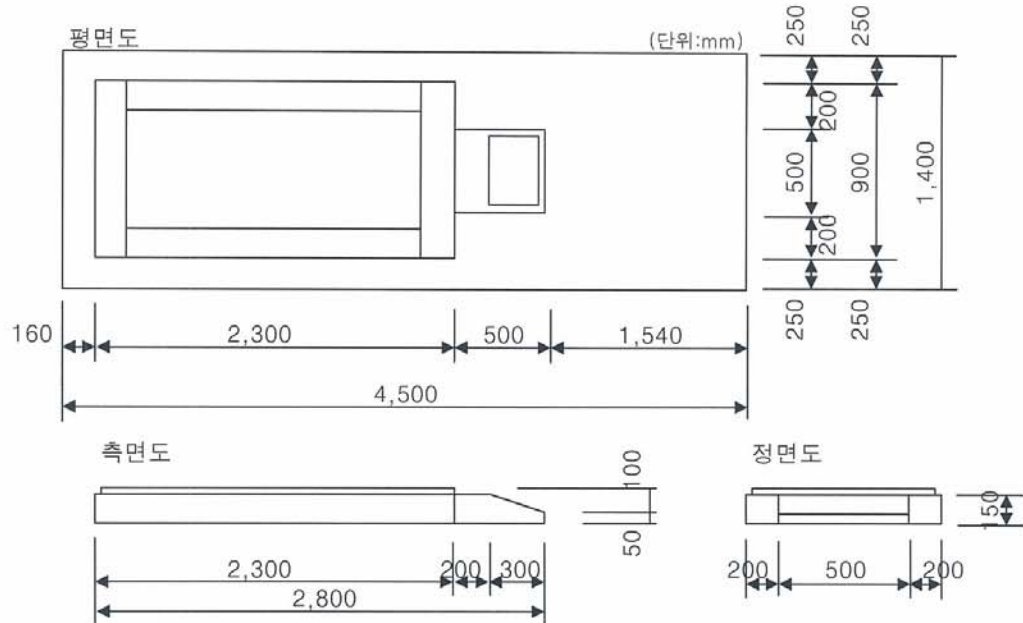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연장 사용료
			정선군민	기타 지역주민	
공설묘지 (정선하늘공원)	매장분묘	단장(6.3㎡)	923,000	-	300,000
		합장(8.1㎡)	1,200,000	-	390,000
	봉안묘(12기 : 10㎡)		1,476,000	-	480,000
공설봉안시설 (하늘원)	유연유골 (15년)	개인단	300,000	1,000,000	300,000
		부부단	500,000	1,500,000	500,000
	무연유골(10년)		150,000	300,000	-
공설화장시설 (정선하늘터)	대인(만15세이상)1구당		100,000	700,000	
	소인(만15세미만)1구당		80,000	500,000	
	죽은태아 1구당		80,000	400,000	
	개장유골 1구당		50,000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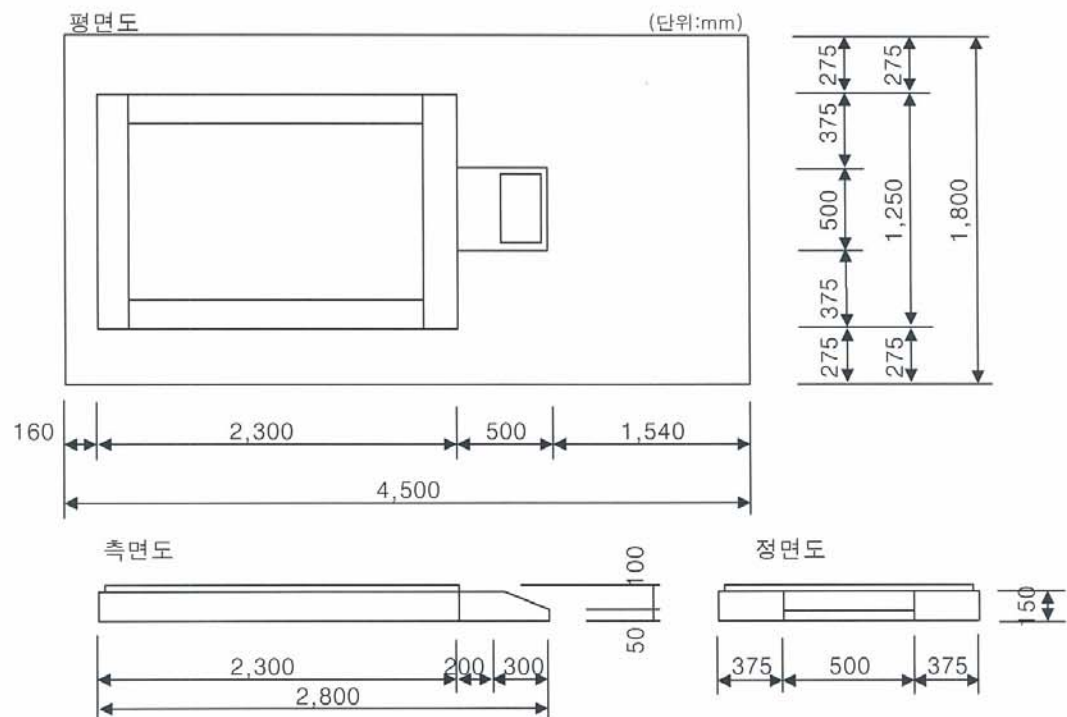
별표 3

분묘의 규격(제19조제1항 관련)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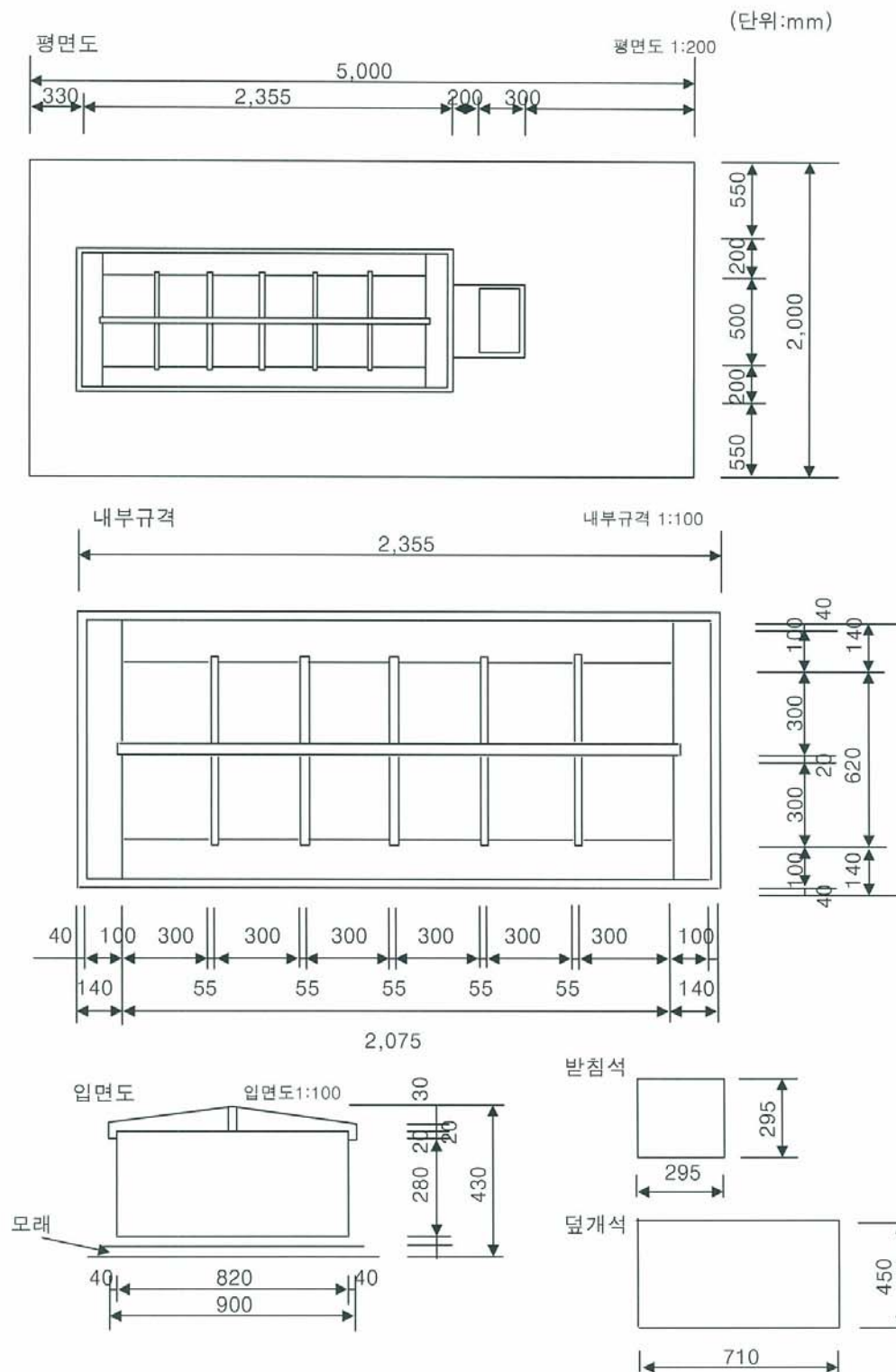


합장



별표 4

봉안묘 시설 규격(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5

봉안당 시설기준(제24조 관련)

시설명	시설기준
봉안안치단	봉안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로 설치한다.
유 골 함	유골함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로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한다.
위 패	①봉안안치단의 위패는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 ②유골함의 위패는 가로 4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완료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여 효율적인 장사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5조)
-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와 요건 규정(안 제7조)
-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처리절차 명시(안 제8조)
-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감면대상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 장사시설의 위탁운영 대상 및 기준 명시(안 제14조)
-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등 규정(안 제20조 및 제25조)
-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2. 24.

정선군조례 제2201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3.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4.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대해 지원요청
5.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위탁
6. 기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정 이 유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대회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원범위 규정(안 제3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
 -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 기타 유치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0. 2. 24.

정선군조례 제2202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2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이내”를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를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을 각각 “별표 1의2” 로 한다.

제2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별표 20 제2호 및 영 별표 27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48조제5호 중 “라목” 을 “다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방화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1조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영 제9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란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9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로 한다.

제63조의2 중 “1년으로”를 “6개월로”로 한다.

별표 1 제7호 및 별표 2 제4호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4 제4호 및 별표 5 제4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각각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3 제10호, 별표 15 제8호 및 별표 18 제9호 가목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9호”로 하고, 나목 중 “제2조제9호”를 각각 “제2조제11호”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3 제10호 바목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별표 3 제12호, 별표 4 제11호 및 별표 5 제11호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각각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로 한다.

별표 3 제15호, 별표 4 제14호, 별표 5 제14호, 별표 6 제12호, 별표 9 제12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9호, 별표 12 제11호, 별표 13 제13호 및 별표 20 제10호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각각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4 제5호 및 별표 5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6 제5호, 별표 10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6 제16호, 별표 7 제13호, 별표 10 제16호, 별표 12 제13호, 별표 14 제12호, 별표 15 제15호, 별표 17 제13호, 별표 18 제16호, 별표 20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6 제9호, 별표 9 제9호 및 별표 10 제11호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각각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별표 7 제10호, 별표 8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연료공급시설”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로 한다.

별표 7 제12호, 별표 8 제11호 중 “교정 및 군사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4호 중 “(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한한다)”를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한한다)”로, 같은 별표 제6호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의료시설”로 하며, 같은 별표 제7호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8 제2호 중 “영 별표 9 제1호가목”을 “제1호 가목”으로 하고, 별표 9 제1호

중 “영 별표 10 제1호나목” 을 “제1호 나목” 으로 한다.

별표 13 제6호 중 “영 별표 14 제1호라목” 을 “제1호 라목” 으로 한다.

별표 14 제7호 및 별표 17 제5호 중 “제8호” 를 “제10호” 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를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로 한다.

별표 15 제4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 을 “판매시설” 로 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별표 제9호 중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를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로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6 제5호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1호 중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를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로 한다.

별표 17 제7호 중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를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로 한다.

별표 18 제6호 중 “고등학교” 를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로 한다.

별표 19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21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에 것으로서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것에 한한다)”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별표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별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4 제목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골지천, 임계천, 송현천, 송천, 봉산천, 오대천, 어천, 용탄천, 지장천, 석항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 정 이 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 및 계획관리지역 내 지방하천 양안 100미터이내 지역에서 음식업과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선군 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계획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 규제완화(안 별표24)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 기존공장 및 유원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안 제50조, 제50조의2)
- 기존 건축물의 특례(안 제55조의2)
-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 제59조)
-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규제완화(안 별표 2~19)

정선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 02. 05.

정 선 군 수

정선군훈령 제387호

정선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선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석은 물론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공기업 포함)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의 대상 및 범위) ①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다만, 설계변경 심사는 10억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물가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을 포함한다)이 직전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단, 50억 이상 공사는 5퍼센트 이상)
2. 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그 밖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구매 및 제조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②제1항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는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계약심사부서의 장(이하 “세무회계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 요청하는 사업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 또는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약심사 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방법) ①계약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세무회계과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세무회계과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무회계과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심사접수부에 등재한 후 심사담당자를 지정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세무회계과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심사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회계과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세무회계과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계약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세무회계과장은 발주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평가·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정선군 일상감사운영규정」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선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이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행한 것으로 본다.

공사 원가계산서

비 목			구 분	금 액(원)	산 출 근 거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기계경비					
		특허권원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 설 비					
		지급임차료					
		보 험 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 상 비						
	안전점검비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순 원 가							
일반관리비(순원가×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5%]							
총 원 가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별지 제2호서식]

설계변경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과-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공 사 명			공사종류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당초 :	원,	변경 :	원	증감율 %
공사개요					
설 계 자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발주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1. 설계내역서 전산파일(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상호 자동연동 파일) 1부. 2. 수량산출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설계도면, 시방서, 견적서등)					

발신명의

[별지 제3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 0 0 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용역명			용역종류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기술(일반)용역 원가계산서

항 목			구 분	금 액(원)	산 출 근 거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성 비	비 고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연 구 활 동 비			
	소 계			
③ 순 원 가(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⑤ 일반관리비합산원가(③+④)				
⑥ 이 윤()%				
⑦ 이 윤 합 산 원 가(⑤+⑥)				
용 역 비 총 계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해당사항만 기재)

1. 인건비

가. 총 액

구 분	계	기준단가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연 근무수당	야 간 근무수당	휴 일 근무수당	상 여 금	퇴 직 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계					
연구원						
	계					
연구보조원						
	계					
보조원						
	계					
합 계						

※ 담당과업은 연구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할 것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액

(1) 연장근무수당

구 분	연장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원수		시간수		소요금액	
			1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2) 야간근무수당

구 분	야간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 원 수		시 간 수		소요금액	
			1 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3) 휴일근무수당

구 분	휴일근무사유	근무일수	인 원 수		소 요 금 액	
			1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4) 상여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기본급월액	지 급 율 (연간)	소요금액	
				1인당(월)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5) 퇴직충당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상여금	소 요 금 액	
				1 인 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2. 여비

가. 국내여비

(1) 출장내역

구 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기간	
				박 수	일 수
책임연구원			명	박	일
연구원			명	박	일
연구보조원			명	박	일
계					

(2) 소요금액

구 분	1인당					누계
	계	숙박비 (박수 x단가)	일비 (일수 x단가)	식비 (일수 x단가)	운임 (일수 x단가)	
책임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보조원		()	()	()	()	
계						

주) 출장지가 여러 지역일 경우 각 내역 작성후 총괄 합산

나. 국외여비

(1) 출장내역

① 출장목적 :

② 출장인원 : 명(책임연구원 : 명, 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③ 출장지역 :

④ 출장기간 : ~ (박 일)

⑤ 주요일정

일 자	활 동 사 항	비 고

(2) 소요금액

구 분	인원수	1 인 당						누 계
		계	항 공 료 (실비계산)	일 비 (일수×단가)	숙 박 비 (박수×단가)	식 비 (일수×단가)	준비금 (기준액)	
책임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보조원				()	()	()	()	
계								

3. 유인물비

건 명	인쇄방법 및 내용		규 격	부수	면수	단 가	소요금액
	용지종류	색도, 특수사양 등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계							

※ 읍셋인쇄인 경우 별첨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조달청양식)를 작성 첨부할 것.

4. 전산처리비

사용품목	규 격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 토너 가격 산출시 프린터 및 복사기의 제품명과 기종을 기재할 것

5.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품 명	용 도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6. 회의비

가. 회의개최내역

구 분 (회의명칭)	개최목적	개최회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계						

나. 소요금액

구 분	1회당					누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 ×단가)	발표수당 (인원수 ×단가)	음료식대 (인원수 ×단가)	기 타	
		()	()	()		
		()	()	()		
계						

7. 임차료

임차대상	임차목적	임차회수	소요비용	
			1회당	누계
계				

8. 교통통신비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장회수		소요금액	
		1인당	누계	1회당	누계
계					

나. 우편료

우편종류	발송목적	발송건수	소요금액	
			건당	누계
계				

다. 전신전화비

구 분	사 유	소요금액	산출근거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계			

9. 감가상각비

가. 산정금액 :

나. 산출근거 :

※ 제출서류

1.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학력, 경력 등) : 수의계약인 경우
2. 비목별 기초계산서 금액·수량 산출기준 근거자료(견적서 등)
3.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옵셋인쇄인 경우)
4. 기타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학술연구용역 유인물비[옵셋인쇄] 산출기초)

○ 품 명 :

○ 인쇄물내역

1. 수 량 : 부
2. 규 격 :
3. 용 지 : 표지 매, 본문 매
4. 면 수 : 표지 면, 본문 면
5. 인쇄색도 : 표지 도, 본문 도
6. 특수사양 :
7. 기 타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조 판 비			
사진제판			
인쇄판료			
인 쇄 비			
제 본 비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별지 제4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 0 0 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서 및 사양서 1부.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별지 제5호서식]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 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발신명의	
------	--

[별지 제6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 0 0 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제조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별지 제8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 0 0 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별지 제9호서식]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 적용.

[별지 제10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 0 0 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인쇄물 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별지 제11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쇄 물 심사요청서에는 반 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 출력비'를 산정한 경 우, 인쇄물 심사요청 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별지 제12호서식]

계약심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

□ 건 명 :

순번	심사결과(조정사항)	조 치 내 용	소요예산 (천원)			비고
			당초	조정	증감	

※ 증감액 산정 시 공사비는 원가계산율 반영

[별지 제13호서식]

심사결과 요약서(공사)

공 사 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제경비	운반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계				
계						
일반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액]						
관급자재비						
이설비						
[총공사비]						

[별지 제14호서식]

주요심사내용[예시]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 요청금액 : 천원
- ☐ 심사금액 : 천원
- ☐ 절 감 액 : 천원
- ☐ 절 감 륜 : - %

☐ 주요 심사내용

- ☐ 자재단가 조정 : 외 중
-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중
-
-

☐ 기타사항

- ☐ 계약심사조건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별지 제15호서식]

0 0 0 0 건설공사[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별지 제16호서식]

심사결과 요약서(용역)

용역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제 경 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경비				
		소계				
계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7호서식]

주요심사내용[예시]

☒ 용역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 요청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 주요 심사내용

-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기타사항

- ☐ 계약심사조건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별지 제18호서식]

주요심사내용[예시]

☒ 건 명 :

☐ 개요

품 명	
구매 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 요청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 단가 조정 : 외 종
 -
 -

☐ 기타사항

- ☐ 계약심사조건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10. 2. 5.

정선군훈령 제388호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배부기관명	배부번호	배부기관명	배부번호
각 실 과	노	농업기술센터	로 - 1
기획감사실	노 - 1	보 건 소	로 - 2
주민생활지원실	노 - 2	상하수도사업소	로 - 3
자치행정과	노 - 3	읍·면, 출장소	도
녹색정책과	노 - 4	정 선 읍	도 - 1
세무회계과	노 - 5	고 한 읍	도 - 2
민원봉사과	노 - 6	사 북 읍	도 - 3
환경산림과	노 - 7	신 동 읍	도 - 4
농업정책과	노 - 8	화 암 면	도 - 5
관광문화과	노 - 9	남 면	도 - 6
산업경제과	노 - 10	여 량 면	도 - 7
건설도시과	노 - 11	북 평 면	도 - 8
재난안전관리과	노 - 12	임 계 면	도 - 9
		함백출장소	도 - 10
직속기관	로	정선군의회사무과	의회

개 정 이 유

-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맞추어 공문서 배부번호 규정을 개정하여 문서를 신속정확하게 배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

주 요 내 용

- 녹색정책과가 신설됨

정선군고시 제2010-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2. .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위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52-46번지 외10필지
3. 사업시행자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 강원도개발공사 대표 조 방 래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분양아파트	○ 대 지 면 적 : 8,702.29㎡ ○ 건 축 면 적 : 2,306.89㎡ ○ 건축 연면적 : 26,914.78㎡ ○ 건설호수 및 건축규모 - 건설호수 : 5동 265세대, - 건축규모 · 78.38㎡ (전용 53.48㎡) : 199 · 87.55㎡ (전용 59.77㎡) : 66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기간 : 2010. 4. - 2012. 4.	총사업비: 26,130,000천원 (사업주체자금: 2,746,085천원 금융기관자금: 14,575,000천원 기타자금 : 8,808,915천원)

5. 관련법령에 의한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정선군공고 제2010-63호

2010.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에 따라 2010년도 하반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 2. 3.

정 선 군 수

- 공고기간 : 2010. 2. 3. ~ 2010. 5. 3.(3개월)
- 공고대상 : 정선지역자활센터
- 문의전화 : 560-2964

붙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1부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참조)

정선군공고 제2010-72호

정선군도로점용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정선군도로점용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0. 02. 08.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본 조례는 도로법(법률 제9730호 2009.05.27)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 제6조제1항3호)

○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면제)

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나. 점용료의 감면 기준 추가(안 제6조제2항제1호)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면제

다.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반영(안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호~5호)

○ 도로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국민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기간 : 2010. 02. 09 ~ 02. 28(20일)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마. 제출 및 문의사항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도로관리부서(우편번호 233-804)
- FAX 제출 : 033-560-2596
- 문의 전화 : 033-560-2486

붙 임 : 1) 정선군 도로점용정수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현행 조례 1부. 끝.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3.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 허가는 경우. 다만,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 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 판(돌출간판을 포 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 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 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작차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

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7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현행>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2007. 04. 17 조례 제20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는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준용) 도로점용료의 조정, 감면, 부과·징수, 반환 등은 시행령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76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2. 10.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가.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 나. 2010년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사업소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감면대상인 “사업소세”를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 (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 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보칙으로 신설(안 제21조, 제33조, 보칙 제34조의2)
- 다.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사업소세를” 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로 한다.

제21조 및 제33조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를 각각 “부동산” 으로 한다.

제22조 중 “부동산” 을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선군공고 제2010-77호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2. 10.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나.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하하고 '10년 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민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2호 추가 및 같은조 제3항2호 삭제,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05조까지 각각 삭제)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안 제21조의2신설, 제22조개정, 제22조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각각신설)

다.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조문 삭제(안 제20조)

○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73조에 기 규정되어 있음

라. “소득세할 주민세”가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각각 삭제)

○ “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기 규정되어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세율) ①법 제17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고의무)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1절의2(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5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5조의3(세율) ①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제25조의4(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2장제5절(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100조부터 제10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정선군조례 제2169호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를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선군공고 제2010-78호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2. 10.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 서식을 정비함
- 나.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균등분 주민세) ①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33조 및 제1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비과세 및 감면) ①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 및 제91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6조의6 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

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3(대장 정리)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군수는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1절의2(제135조의4부터 제135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135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부터 제99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제103호서식까지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5조의6(특별징수) ①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 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 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의3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 징수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 징수한다.

- 소득금액 × 제한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frac{\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 (\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⑤부과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5조의7(보통징수) ①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101호부터 제104호까지 서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 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35조의8(대장 정리) ①군수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 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제4절(제148조부터 제156조까지) 및 같은 장 제9절(제165조부터 제169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0호서식부터 제10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54호서식부터 제58호서식까지 및 제83호서식부터 제8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93호

공 고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고사목 제거사업 실행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10년도 소나무류 재선충병방지 고사목제거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로 주변환경 증진 및 소나무류 재선충병 의심목 오인신고 차단.
3. 사업내용 : 소나무류 고사목제거 668본
4. 사업기간 : 2010. 3 ~ 4월
5. 대상사업지 내역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 2010. 2. 11 ~ 3. 2(20일간)
7. 산주의견 수렴 : 공고기간 내
8.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선군에서 일괄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 033-560-2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 대상지조서 1부. 끝.

정 선 군 수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지 고사목 제거대상내역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황		비고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정선	광하	산159	임	30	1	
정선	광하	산159	임	20/20-30	7	
정선	덕송	산48	임	20	2	
정선	덕송	산48	임	22/20-26	5	
정선	덕송	산50-1	임	24	1	
정선	덕송	산50-1	임	24/24-30	2	
정선	덕송	산50-1	임	24/20-30	9	
정선	덕송	산50-1	임	24/20-40	3	
정선	덕송	산94-3	임	20	2	
정선	덕송	산94-3	임	24	1	
정선	덕송	산109	임	16	2	
정선	덕송	산109	임	30	1	
정선	덕송	383-1	도	20	1	
정선	덕송	383-1	도	30	1	
정선	덕우	산51-1	임	20	1	
정선	덕우	산90-2	전	22/20-26	16	
정선	덕우	산101	임	20/16-22	12	
정선	덕우	산101	임	20/16-26	13	
정선	덕우	산110	임	22/16-36	7	
정선	덕우	산110	임	22/22-40	6	
정선	덕우	산110	임	22/18-28	3	
정선	덕우	562	전	24	1	
정선	덕우	660-1	도	20/16-24	6	
정선	덕우	660-2	전	20/16-36	4	
정선	덕우	660	전	24/20-38	4	
정선	덕우	660	전	24/20-40	10	
정선	덕우	661-1	전	20/20-22	4	
정선	덕우	685	임	22	2	
정선	덕우	707	임	22/20-36	4	
정선	덕우	707	임	24/20-30	7	
정선	덕우	707	임	40	1	
정선	덕우	707	임	30	1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황		비고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정선	북실	산3-2	임	30	1	
정선	북실	산3-2	임	26	2	
정선	북실	산3-2	임	24	3	
정선	북실	산3-2	임	22	3	
정선	북실	산3-2	임	20	1	
정선	북실	산11	임	20	2	
정선	북실	산11	임	22	1	
정선	북실	산11	임	24	3	
정선	북실	산11	임	20	1	
정선	북실	산11	임	22/20-24	3	
정선	북실	산129	임	25	1	
정선	신월	산68	임	20/16-26	19	
정선	신월	산68	임	18/16-22	3	
정선	신월	산68	임	60	1	
정선	신월	306	임	20/16-24	5	
정선	신월	338-1	임	22/20-24	4	
정선	애산	13	전	24	2	
정선	애산	산191-9	임	32/30-40	5	
정선	애산	산191-9	임	26/20-60	10	
정선	애산	산191-10	임	40	2	
정선	애산	산191-10	임	40	3	
정선	애산	산191-10	임	24/24-40	2	
정선	애산	산191-11	임	30	2	
정선	애산	산105-1	임	20/16-24	7	
정선	애산	산105-1	임	20	4	
정선	애산	산105-1	임	22/20-24	3	
정선	애산	산105-1	임	24	1	
정선	애산	산175	임	42/40-60	11	
정선	애산	산175	임	40	1	
정선	애산	산175	임	16/16-22	2	
정선	애산	737-4	전	22/22-26	4	
정선	애산	308	전	20/20-24	4	
정선	애산	308	전	20	4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황		비고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정선	애산	750	전	20/20-26	5	
정선	여탄	산89-2	임	30	1	
정선	여탄	산90	임	18/16-26	3	
정선	여탄	산91	임	28/26-30	5	
정선	여탄	산91	임	20/16-40	3	
정선	여탄	산91	임	18/16-20	3	
정선	여탄	산93	임	18	1	
정선	여탄	산93	임	18/16-20	6	
정선	여탄	산93	임	18	2	
정선	여탄	산93	임	20/16-26	6	
정선	여탄	401	전	18	2	
정선	여탄	541	전	34	1	
정선	여탄	541	전	22	2	
북평면	나전	산2	임	18	5	
북평면	나전	산2	임	16	1	
북평면	나전	산300	임	24/24-38	3	
북평면	남평	산61	임	20	2	
북평면	남평	산61	임	18/16-20	5	
북평면	남평	산61	임	18/16-18	5	
북평면	남평	산61	임	16	3	
북평면	남평	산61	임	18	2	
북평면	남평	산64	임	20	1	
북평면	남평	산66	임	20	1	
북평면	남평	산66	임	16	1	
북평면	남평	산66	임	16	1	
북평면	남평	산66	임	20/16-28	3	
북평면	남평	산66	임	2012-10-16	3	
북평면	남평	산66	임	14	2	
북평면	남평	산66	임	18	1	
북평면	남평	산67	임	26	1	
북평면	남평	산136	임	26/24-46	4	
북평면	문곡	산150	임	16	1	
북평면	문곡	산150	임	14/10-18	11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황		비고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북평면	문곡	산150	임	12	1	
북평면	문곡	산150	임	30	3	
북평면	문곡	산179	임	24/22-34	4	
북평면	문곡	산189	임	18/16-18	6	
북평면	문곡	362	전	18/16-24	10	
북평면	문곡	365	전	18/16-18	10	
북평면	북평	산222	임	20/16-22	9	
북평면	북평	산225-1	임	20	5	
북평면	북평	산286	임	22/20-32	4	
북평면	북평	산286	임	20/18-22	5	
북평면	북평	산287	임	24	1	
북평면	북평	산287	임	24/22-30	3	
북평면	북평	산288	임	20/16-46	5	
북평면	북평	산289	임	24/16-50	5	
북평면	북평	294-4	전	18	7	
북평면	북평	산297	임	34	2	
북평면	북평	산300	임	32	1	
북평면	북평	산300	임	24/20-36	5	
북평면	북평	산300	임	24	1	
북평면	북평	산300	임	24	3	
북평면	북평	산300-8	임	26	2	
북평면	장열	산45	임	18/10-20	3	
북평면	장열	산45	임	16/10-16	14	
북평면	장열	산47	임	18/10-22	10	
북평면	장열	산47	임	18/10-30	7	
북평면	장열	산48	임	16	1	
남면	광덕	산9	임	18	12	
남면	광덕	산10	임	22/16-28	11	
남면	광덕	산74	임	24/16-30	8	
남면	광덕	산87-1	임	18/16-22	11	
남면	광덕	산204	임	22/16-30	7	
남면	광덕	산204	임	24/16-46	8	
남면	광덕	산204	임	20	4	
남면	광덕	687	천	24/18-30	3	
남면	낙동	산110-2	도	30	2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황		비고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남면	낙동	산110-3	도	22	1	
남면	낙동	산117-4	도	30	1	
남면	낙동	산133-1	임	24/16-40	5	
남면	낙동	204-4	도	16	2	
남면	낙동	산288	임	22/16-30	6	
남면	낙동	584	전	28	4	
남면	유평	496-3	임	16	12	
남면	유평	496-3	임	26	2	
남면	유평	496-3	임	18	3	
남면	유평	496-3	임	24/20-42	9	
남면	문곡	산31-6	수	24	3	
남면	문곡	산32-3	임	20/16-28	6	
남면	문곡	산85-3	임	22	9	
남면	문곡	산85-3	임	16	14	
남면	문곡	산142-3	임	20/16-22	33	
남면	문곡	산143-9	임	24	4	
남면	문곡	산143-10	임	30	1	
남면	문곡	591-25	구	28	4	

정선군공고 제2010-101호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19.

정 선 군 수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군정홍보 및 지역사랑 정신 제고, 능력배양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지 구독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사항에 다음을 추가함(안 제3조)
 - 향토지 구독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560-2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중 “경비의 일부를” 을 “경비를”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향토지 구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102호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공고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2.

강원도 정선군수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근로소득 제외,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table><tr><th>구분</th><th>1인 가구</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6인 가구</th></tr><tr><td>최저생계비(원/월)</td><td>504,344</td><td>858,747</td><td>1,110,919</td><td>1,363,091</td><td>1,615,263</td><td>1,867,435</td></tr><tr><td>소득기준(원/월)</td><td>353,041</td><td>601,123</td><td>777,643</td><td>954,164</td><td>1,130,684</td><td>1,307,205</td></tr></table>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예시> •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1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33만원 (3년간 총 1,188만원 + 이자) • 월소득 114만원인 4인 가구 : 월 장려금 20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0만원 (3년간 총 1,440만원 + 이자)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지원기간	○ 3년																					
지원제외대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선정기준	○ 가구특성, 사업 이해 및 동의 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 상담 접수 ▶ 선정 심사 ▶ 결과 통보 ▶ 계좌 개설 ▶ 본인 저축 ▶ 적립금 지원 ▶ 사례 관리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신청기간	○ 2010. 2.22 ~ 2010. 3. 5, (평일 월~금, 09~18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임. 단,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신청·접수처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1】

< 희망키움통장 참여 안내문 >

희망키움통장 사업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참가 신청 및 선정 안내

- 1) **신청제출 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사용·적립계획서 1부, 개인신용 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2)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조사, 서류심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가자 참여사항 안내

1) 기본사항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저축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가자는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재무교육·노후설계교육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저축관련 사항

-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5일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장려금 및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 본인 희망시, 필수교육 불참시, 적립기간 중 가구 근로소득이 일정기간(상시직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기간 중 장려금 및 매칭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적립 도중 철회를 원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 후 철회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 및 이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은 사업종료 후 **탈수급시 전액 지급**되며, 적립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지급전에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급된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축기간 중 **가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초과시에도 사업대상 유지**는 가능하나,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준비금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수행기관과 약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신 경우 적립금 중 본인저축액 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붙임 2-1】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직업		근무지 및 주소					
비상연락	관계		성명		연락처			
가 족 사 황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O, X)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가 구 경 제 생 활	가구총소득	원(자활근로소득 및 현금급여 제외)						
	거주형태	☐ 자가(시가 : 원) ☐ 월세(보증금 : 원/월세 : 원) ☐ 전세(보증금 : 원) ☐ 임대주택(보증금 : 원/월세 : 원) ☐ 무상거주() ☐ 기타()						
	부동산 등	원						
	금융자산 등	원						
	부채상황	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0 년 아 이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귀하 (OO시)

1. 1가구에 취업 수급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 할 것
2.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4.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붙임 2-2】

< 희망키움통장 적립 및 사용 계획서 >

사업 요약	1. 신청동기 * 가구특성(한부모 가정, 장애인/장애인 부양, 65세 이상 노인 부양, 다자녀 가정), 현직장 근무경력 등 적시
	2. 저축액 마련계획 (10만원 내에서 가능한 본인저축액 선택하여 적시)
	3. 저축액 사용계획 * 저축목적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부채상환 사용 불가)
	4. 향후 자립·자활계획 * 탈수급 후 향후 계획 등

【붙임 3】

< 개인 신용정보 조회 · 제공 · 활용 동의서 >

신용회복위원회 귀중

희망키움통장사업 및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 활용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 · 활용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관한 내용 >

☐ 제공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회복지원대상 채권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단, 상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정책자료로만 활용)

☐ 제공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 신용회복지원내용(지원사실, 일자, 금액, 채권기관, 상환내역 등)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등)
-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 ☐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당해 사업 지원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시 당해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내용 >

☐ 조회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조회 목적

-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신용회복지원 상담, 지원여부 결정 및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의 판단
-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타 (내용 : _____)

- ☐ 조회할 신용정보 : 채무불이행정보, 대출 · 카드개설 등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 평점 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 동의의 유효기간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사업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다만 본인의 지원 신청이 귀 기관 및 관련기관에 의해 거절된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는 그 시점까지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정선군공고 2010-1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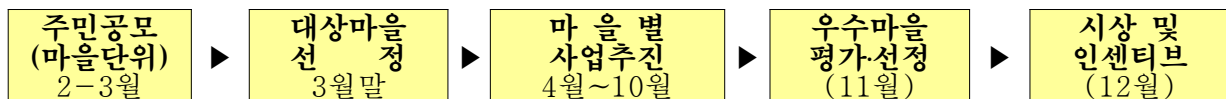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공모 공고

군민의 자율 사업계획(안) 공모 및 심사, 채택에 의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

정 선 군 수

- 공모기간 : 2010. 2. 22 ~ 2010. 3. 19
- 응모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정선군민으로 마을가꾸기 운동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마을단위)
- 사업내용 :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된 특징적 요소로서 자연, 문화, 전통, 인공, 추상적 자원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마을 보물가꾸기를 통한 주민 소득화 사업(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
- ※ 주요항목 : 개요, 대상지역, 추진내용, 추진체계 및 투자계획, 기대효과 등
- 작성방법 : 자율적으로 계획수립하되 주요항목은 필수 기재(A4기준 10매이내)
-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 신청자 명단 (해당주민 10명 이상 연명부 작성 제출)
- 추진절차



- 심사기준
 - 주민 참여도 : 아이디어 발굴 등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
 - 창의성 및 차별성
 - 보물의 지역문화성, 고유성, 차별성, 보물로서의 가치와 소득화 연계성
 - 보물 및 마을가꾸기 계획의 독창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규모, 내용, 자원투자계획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및 타당성
 - 주민자체부담 정도 등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 사업 효과성
 - 보물 및 마을의 소득화 가능성, 주민편익증대, 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선정마을 지원 : 6개마을
 - 마을당 50,000천원 지원 및 도·중앙평가 입상시 인센티브 추가 지원
- ※ 문의 : 각 읍면 총무담당 및 녹색정책과 미래전략팀(☎560-2194)

사업지원 신청 요약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4. 사업대상지역	○ 읍면 마을 (행정리 :)
5. 사업내용	○ ○ ○
6. 주요참여인원 및 구성원	○ 대표자 외 명
7. 예산계획	○ 총계 : 원 - 군비 : 천원, 자부담 : 천원, 기타 : 천원
8. 기대효과	○ ○ ○

위와 같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2010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사업별 신청자 명단

(사업명 :)

(읍면 명)

연번	사 업 명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1					대표자
2					
3					
.					
.					
.					

※ 대표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선정하고 정산 등의 업무처리

□ 마을가꾸기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시)

I. 개 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본방향 등

II. 대상 지역의 현황분석

- 자연환경적 여건(대상 지역의 공간적 범위, 환경적 특성 등)
- 사회경제적 여건(주민현황 및 특성, 현재의 소득여건 등)
- 지역의 주요자원(특화 브랜드,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구비 등)
- 지역공동체의 특성 등
- ※ 마을 전경사진 포함(필수 첨부)

III. 주요 내용

- 대상 지역만들기의 비전 및 목표(마을의 보물찾기)
- 추진과제(재정·비재정 활동포함)
- 추진과제별 세부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지역만들기 기간 포함) 등

IV. 추진체계 및 투자계획

- 추진체계(민·관 협력체계, 지역만들기 전담조직 정비, 전문가적 지원체계 구비계획 등)
- 주민참여 실적 및 계획(지역만들기 계획 아이디어의 원천,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적, 향후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계획 등)
 - ※ 주민 참여과정의 기록물(일지, 회의록) 및 사진 포함
- 사업·재원별 투자계획
 - 주민, 군 재원, 민간자본 유치 등(자부담을 사업비의 5%이상 반영)
 - ※ 재원별로 투자 확정여부를 명시

V. 기대효과

- 정성적 파급효과(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 정량적 효과(재원투자 대비 향후 성과, 주민 증가, 지역소득기반 확대 등)
- 타 지역으로의 파급 가능성

정선군의회의 공고 제2010-2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관내 유치원 · 초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 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군민식생활 개선에 기여 하고자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 및 학교급식비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 다. 지원대상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 라. 학교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마. 급식비 지원신청을 규정 (안 제5조)
 - 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을 규정(안 제6조 ~ 제8조)
 - 사.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의회의장(fax 562-5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전화 560-2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선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식재료를 사용 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우수식재료”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산물

다.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수산물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생산자단체 또는 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3.“식품비”라 함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식재료”라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학교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는 학교 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 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도정선교육청을 통하여 정선군수에게 제출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제6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정선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당연직은 관련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
2. 강원도정선군교육청 교육과장
3. 정선군의회 의원 2인
4. 정선군 소재 학부모단체
5. 정선군 소재 교원단체
6. 정선군 소재 농민단체
7. 정선군 소재 학교 영양사 단체
8.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 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 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0-3호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취지
 - 국제결혼 희망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고 미혼자 뿐만 아니라 재혼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응에 기여코자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낮추어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 2호)
 - 35세 이상 50세 미만 → 30세 이상 50세 미만
 - 나. 재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2조 4호)
 - 다. 지원회수를 1회로 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0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의회의장(fax 562-5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전화 560-2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년월일 : 2010. 2. 22.

발 의 자 : 전주열, 김동식 의원

1. 제안이유

국제결혼 희망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고 미혼자 뿐만 아니라 재혼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응에 기여코자함.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낮추어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 2호)

－ 35세이상 50세미만 → 30세이상 50세미만

나. 재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2조 4호)

다. 지원회수를 1회로 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0조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미혼자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만35세이상”을 “만30세이상”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재혼자”라 함은 혼인의 취소나 해소 이후에 다시 혼인하는 자로서 법령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30세 이상 만50세 미만자를 말한다.

제3조 중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를 “미혼자나 재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지원은 1회에 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